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헝가리 · 시드니 한국문화원 종합감사 -

2017.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주 헝가리 ·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요 현황

1. 재외문화원 설립 목적 및 주요 임무	2
2. 인원, 시설 및 예산 현황	3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총평	4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7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① 문화원 인건비 조치 부적정 (주의 요구)	8
② 인건비 집행 부적정 (통보)	10
③ 행정직원 사회보장세 대납 부적정 (주의 요구)	12
④ 행정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 (주의 요구)	15
⑤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주의 요구)	17
⑥ 수입금 관리 부적정 (주의 요구)	20
⑦ 헝가리 내 한류커뮤니티 활성화 (통보 '모범사례')	22
⑧ 수입금 직접 사용 부적정 (주의 요구)	27
⑨ 관서운영경비 관리 부적정 (주의통보 요구)	30
⑩ 강의로 현금 지급 부적정 (주의 요구)	36
⑪ 한옥공간 조성공사 계약 부적정 (주의 요구)	39
⑫ 행정직원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기준 및 보상 부적절 (통보)	43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주 헝가리·시드니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통하여 문화원 운영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2014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문화원의 기관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문화원 운영에 대한 ▲ 문화원 주최 각종행사 및 사업지원의 적정성 ▲ 예산 편성·집행 등 회계처리 적정성 ▲ 행정직원 채용 및 평가 등 인사업무의 적정성 ▲ 복무실태 ▲ 기타 기관운영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실지감사 기간은 2017. 4. 18.부터 4. 27.까지 8일 간이며, 감사인원은 문화원 별 각 2명씩 총 4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 감사반 구성 】

감사 대상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주 헝가리 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주 시드니 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Ⅱ. 주 헝가리 ·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요 현황

1. 설립 목적 및 주요 임무

주 헝가리 · 시드니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자원을 주재국에 소개하여, 헝가리, 호주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 주요 임무

- 주재국내 한국문화 확산 및 한국 관련 일반정보 제공
- 세종학당 및 문화강좌 운영, 한국 관련 영화제, 공연, 전시회 개최
- 한국과 주재국 간 문화교류 증진
- 주재국 주요인사 및 언론인 대상 국가 홍보 및 방한 초청사업 지원 등

나. 연 혁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 권영섭 문화홍보관 부임 ○ 2012.2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개원 ○ 2014.2 김재환 문화원장 부임(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 김영수 문화홍보관 부임 ○ 2011.4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개원 ○ 2012.2 이동욱 문화원장 부임 ○ 2015.2 안신영 문화원장 부임(현)

2. 인원, 시설 및 예산현황

가. 주 헝가리 한국 문화원(부다페스트 소재)

1) 인 원 : 원장 1명, 직원 7명(한국인 6명, 현지인 1명)

2) 시설 현황

항 목		내 용
일반현황 (소유형태, 면적 등)		임차 (1층) / 1,168.4m ²
본관	1층	리셉션, 공연장, 강의실 등 1,168.4m ²

3)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총 예산	일반회계	관광기금
2014년	994,542	905,230	89,312
2015년	1,079,067	934,389	144,678
2016년	1,505,451	1,240,657	264,794
2017년	1,134,154	1,002,254	131,900

나. 주 시드니 한국 문화원

1) 인 원 : 원장 1명, 직원 7명(한국인 5명, 현지인 2명)

2) 시설 현황

항 목		내 용
일반현황 (소유형태, 면적 등)		임차 (1층 일부사용) / 937.7m ²
본관	1층	아리랑홀, 멀티미디어전시실 등 937.7m ²

3)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총 예산	일반회계	관광기금
2014년	1,573,852	1,436,602	137,250
2015년	1,679,558	1,541,349	138,209
2016년	1,819,980	1,691,017	128,963
2017년	1,227,371	1,130,291	97,080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총 평

주 헝가리·시드니 한국문화원은 각각 2012년 2월, 2011년 4월에 개원된 이후 주재국민들에게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영화제, 한식체험, 세종학당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후원함으로써 동유럽 및 호주에서 한국문화를 확산시키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위 문화원들이 개원 이후 한국문화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와 함께 채용, 회계 관련 규정 준수 등 기관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재외문화원 우수 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 결과 ▲ 문화원은 기관운영비로 행정직원의 급여를 집행해야 하는데도, 해외문화홍보원은 사업비(관광기금)로 위 직원 급여를 집행하도록 문화원에 기금을 배분하였다.

▲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은 ① 행정직원의 급여를 기관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② 행정직원 개인이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문화원이 대납하였으며, ③ 채용 심사기준 및 심사표 없이 행정직원을 채용하였다. 또한 ④ 전용 절차 없이 일반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고, ⑤ 한국어 강좌에서 발생한 수입금 변동사항에 대해 관련서류 작성 없이 세입 조치하는 등 세입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⑥ 한류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전개하여 분야별, 지역별 한류문화 동호회 수를 대폭 증가시켰고, 한류의 주류였던 k-pop, 한국드라마 분야를 전통무용, 국악, 한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한류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모범사례).

▲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은 ① 각종 강좌 수입금 등을 해외홍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동 사업비의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② 관서운영경비 출

납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의 불일치 내역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각종 강좌 강의료는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④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한옥공간 조성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고, 동 공사의 추가공사비를 기존계약의 변경 없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대로 지급하였으며 ⑤ 직원의 1일 시간 외 근무시간 인정 기준은 일과 후 근무한 총 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하고 인정하는 등 주재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 **현지시정 조치로는** ① 지급원인행위 근거 문서 작성 후 예산을 지출토록 하고(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② 현금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지급결의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며,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③ 업체선정시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④ 관광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조치 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지에서 채용한 행정직원들이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및 「재외문화원 회계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로 행정직원 교육 등 개선이 필요하고, ‘한류 커뮤니티 육성사업’ 등을 통해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문화원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금액 (천원)	감사자
1	해외문화홍보원	주의 요구	문화원 인건비 조치 부적정		
2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통 보	인건비 집행 부적정		
3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행정직원 사회보장세 대납 부적정		
4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행정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		
5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6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수입금 관리 부적정		
7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통 보 (모범사례)	헝가리 내 한류 커뮤니티 활성화		
8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수입금 직접 사용 부적정		
9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통 보	관서운영경비 관리 부적정		
10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강의료 현금지급 부적정		
11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주의 요구	한옥공간 조성공사 계약 부적정		
12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통 보	행정직원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기준 및 보상 부적절		
계	12건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원 인건비 조치 부적정
소 관 실 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내 용

재외 한국문화원은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거점별 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표 1]과 같이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 및 전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표 1] 문화원특화사업비(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기타직보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계
2015	52,218	80,987	5,553	6,533	145,299
2016	7,368	232,525	5,234	6,184	251,312
2017	2,439	56,897	4,507	3,449	67,294
계	62,025	370,409	15,294	16,166	463,905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¹⁾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기관운영 인건비 부족으로 행정인력 운영 및 시간외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특화사업 인건비를 문화원 행정직원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기금을 배분하였고, 문화원은 홍보원의 조치에 따라 기금을 특화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문화원 행정직원 ☆☆☆, ★★★, ○○○ 등 3명의 인건비(2015년, 52,218,884원) 및 행정직원(2016~2017)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홍보원은 문화원 인건비 예산이 절대부족한 관계로 행정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관광기금 인건비를 모두 행정직원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홍보원은 문화원 기관운영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고, 문화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원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부족한 인건비를 특화사업기금으로 집행하도록 부적절하게 조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재외 한국문화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기관운영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 보

제 목 인건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실 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내 용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은(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문화원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표 1]과 같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사업비(기금)를 배분받아 한국 전통문화 공연 및 전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표 1] 문화원특화사업비(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기타직보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계
2015	52,218	80,987	5,553	6,533	145,299
2016	7,368	232,525	5,234	6,184	251,312
2017	2,439	56,897	4,507	3,449	67,294
계	62,025	370,409	15,294	16,166	463,905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²⁾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원은 [표 1]에서처럼 특화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인건비(기타직보수)를 문화원 행정직원 ☆☆☆, ★★★, ○○○ 등 3명의 인건비(2015년, 52,218,884원) 및 행정직원(2016~2017)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기관운영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특화사업 인건비를 행정직원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아 집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인건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기금으로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집행한 것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주 형가리 한국문화원장은 기금으로 행정직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관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 의 요 구

제 목	행정직원 사회보장세 대납 부적정
소 관 실 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내 용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은 2012년 개원 이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헝가리 현지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제30조(사회보장비) 제1항에 따르면 '주재국 노동법 등 관계법규에서 행정직원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본부 승인 하에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문화원이 사회보장비 전액을 현지 행정직원에게 부담시킬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 부담분은 문화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화원이 2013년부터 헝가리 현지인을 행정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살펴보면 행정직원 본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문화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고용계약에 따라 문화원은 2013년부터 [표 1]과 같이 문화원부담분 및 개인부담분 사회보장세 모두를 문화원이 부담하였다.

[표 1] 헝가리문화원 사회보장세 납부내역

(단위: 원)

구분	성 명 (행정직원)	사회보장세 (문화원부담분)	사회보장세 (본인부담분)	계	비고
2013		3,051,840	1,436,160	4,488,000	문화원 부담분 및 행정직원 본인 부담분 전액 문화 원이 납부
		2,851,104	1,341,696	4,192,800	
		1,957,176	921,024	2,878,200	
		1,405,152	661,248	2,066,400	
2014		3,011,040	1,416,960	4,428,000	
		3,011,040	1,416,960	4,428,000	
		3,011,040	1,416,960	4,428,000	
		1,691,160	795,840	2,487,000	
2015		3,011,040	1,416,960	4,428,000	
		3,011,040	1,416,960	4,428,000	
		3,011,040	1,416,960	4,428,000	
2016		149,748	70,472	220,220	
		4,035,800	1,899,200	5,935,000	
		3,793,040	1,784,960	5,578,000	
2017		1,362,720	641,280	2,004,000	
계		38,363,980	18,053,640	56,417,620	

사회보장세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문화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보장

세를 문화원이 부담한다는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부담분을 문화원이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헝가리의 사회보장제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납부 방법상의 문제이지, 납세 주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원은 행정직원의 보수에서 개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헝가리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예산으로 납부함으로써 18,053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장은 행정직원 개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문화원이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행정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내 용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원 행정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표1]과 같이 채용하였다.

[표1] 행정직원 채용 현황

연번	공고일	채용 인원	지원 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담당업무	비고
1	`14.03.05	1명	1명	1명	문화 행사 기획(전시) 및 행정 업무	
2	`14.06.02	1명	59명	-	세종학당 한국어 교실 담당,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주요 문화행사 기획	
3	`15.06.24	1명	20명	-	문화 행사 기획(공연) 및 행정 업무	
4	`16.09.06	1명	24명	3명	문화강좌, 홈페이지 관리 및 행사운영지원	
5	`16.11.25	1명	3명	2명	형·한 통번역, 현지언론 및 미디어담당, 총무업무	
6	`17.01.31	1명	56명	10명	공연기획,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	

자료 : 문화원 제출자료 재구성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직원 규정”이라 한다.)제10조(채용방법)에 의하면 주재관은 행정직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이하 ‘지

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면접관은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복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문화원은 직원 채용 시 사전에 서류·면접 전형별 합격인원, 평가 기준, 평가위원 선정 방법 및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관련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문서보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문화원장이 행정직원 모집 공고에 응모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면접을 통해 임의로 행정직원을 채용하였고, 채용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행정직원을 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 형가리 한국문화원장은 향후 행정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관련 서류 보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내 용

「국가재정법」 등 예산 편성·집행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예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비목을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 간 전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아래 [표1] 및 [표2]에서처럼 2014~2015년에 집행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가야금 및 행사용 병풍구입 등으로 22,010천 원, 간담회 비용으로 3,100천 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

였다.

[표1]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자산 내역

지출일자	내용	금액(USD) ¹⁾	비고
2014.11.06	가야금 구입(10개)	3,907(4,430,538원)	
2014.11.27	업무용 핸드폰 구입	1,520(1,723,680원)	
2014.12.02	병풍구입	10,528(11,938,752원)	
2015.02.23	사무실책상구입(4개)	2,670(3,027,780원)	
2015.08.25	업무용 핸드폰 구입	471(534,114원)	
2015.09.04	사무용 가구 구입(의자4개,서랍장1개)	314(356,076원)	
합계		19,410(22,010,940원)	

[표2]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간담회 내역

지출일자	내용	금액(USD)	비고
2014.04.17	북방외교 25주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시 관련 간담회	95(107,730원)	
2014.06.12	국립합창단 유럽투어 헝가리 공연 관련 관계자 오찬 간담회	975(1,105,650원)	
2014.08.13	헝가리 미술협회 관계자 간담회	49(55,566원)	
2014.07.8	●●대 합창단 공연 관련 지도자 및 단원 격려 간담회	1,143(1,296,162원)	
2014.09.03	한글교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43(162,162원)	
2014.12.02	문화원 초청 전통무용강사 업무협의 간담회	39(44,226원)	
2015.02.05	가야금 강좌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간담회	135(153,090원)	
2015.12.14	헝가리 한국영화제 관련 기자간담회	155(175,770원)	
합계		2,734(3,100,356원)	

가야금, 사무용 가구 등은 소모성 비품이 아니고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이므로 문화원은 위 관계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동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며, 간담회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문화원 가용 자산취득비 및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전용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USD 1 = 1,134.00원(2017.4.27. 실지감사 종료일 당시 외환은행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그런데 문화원은 전용도 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수용비를 위 [표1], [표2]처럼 자산취득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국립합창단 유럽투어 헝가리 공연 관련 관계자 오찬 간담회’, ‘●●대 합창단 공연 관련 지도자 및 단원 격려’ 시 건당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는 등 동 지침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장은 향후 예산 비목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전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등을 준수하는 등 예산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수입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내 용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²⁾하고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동 강좌 개설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였다.

[표 1] 수입금 처리 현황

연도	수입금 내용	세입액(US\$)	비고
2015	한국어 강좌 수강료(상반기)	7,205	
	한국어 강좌 수강료(하반기)	7,014	
2016	한국어 강좌 수강료(상반기)	6,549	
	한국어 강좌 수강료(하반기)	5,827	
합 계		26,595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외교부)」 제7조(수입금) 제3항에 따르면 ‘수입금의 변동사항(징수, 환급, 납입, 환전 등)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가 인정된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관리에 관한 규정

2) 2014년까지는 한국어강좌를 무상으로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 유상으로 변경함

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원은 위 규정에 따라 세종학당 한국어강좌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관서운영경비 관리절차를 준용하여 강좌료 징수, 세입 등 수입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 품의서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1]과 같이 수입금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전 품의서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세입조치 하는 등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 형가리 한국문화원장은** 수입금 변동사항을 관서운영경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통보(모범 사례)

제 목 헝가리 내 한류 커뮤니티 활성화

관 계 기 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내 용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2012년 개원 이후 헝가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 지역별 한류 문화 동호회 증가를 통해 한류 문화를 확산 시켰다.

또한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재외 한류 동호회를 한국 전통무용, 국악, 한국어, 한식 등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로 확장시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류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 다양한 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인한 한류 확산

문화원이 헝가리 내 한류 커뮤니티 육성사업으로 한류 문화 동호회는 2015년 117개에서 2016년 170개로 53개가 증가하였고, K-POP, 한국영화드라마, 한국 아이돌 스타 팬클럽 등에 집중된 한류동호회를 전통무용, 국악, 한국어, 한식, e-sport 등 전문성과 문화적 충실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원과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 혹은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류 동호회 활동과 달리 헝가리에서는 부다페스트 뿐만 아니라 헝가리 내 지방에도 확산되어 한류거점도시 중심으로 광역적이고 네트워크 중심의 한국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헝가리 한류 분야별 대표 커뮤니티의 활동성과

‘K-POP 헝가리 한류 동호회’는 한류 동호회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 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호회로 2016년 K-POP 월드 페스티벌 한국본선에 최종 진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매년 K-POP 월드 페스티벌 헝가리 개최 행사를 문화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헝가리 내 한국 대중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 동호회인 ‘○○○○ 무용단’, ‘◇◇◇◇’ (가야금 동호회)는 타국의 한류 동호회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자생적 한국전통 문화 동호회로써 스승과 제자 간의 전수 문화와 같은 한국전통문화에서 나타난 가치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 무용단’은 2015년 국립국악원 ◆◆당, 전주 □□극장에서 공연을 하여 국외 한류동호회 활동 우수 사례로 국내언론(KBS 9뉴스, KBS 뉴스 12, 전주 KBS 9시 뉴스 등)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 동호회’는 한국 게이머, 한국 게임콘텐츠, 한국문화소개 등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동호회로써 2016년 유럽 최초 K-Games 리그를 출범하여 블레이드 앤 쏘울 등 한국 게임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였고 리그전 개최 시 접속자 약 10,000명, 실시간 접속 채팅 수 1,000명 이상의 실적을 기록, 헝가리

트위치³⁾ 방송 시청율 5위 등 현지에서 한국 게임콘텐츠, 한국 문화소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헝가리 한류 동호회는 현지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문화행사 및 한류 종합행사에 각 분야별 프로그램으로 적극 참여, <K-POP 공연>, <한국무용 공연>, <서예>, <국악 공연>, <한식 소개>, <전통 공예>, <태권도 시범>, <전래 동화 소개>, <전통 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동호회 부스를 운영하여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 전파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헝가리 문화 축제 중 하나인 2016년 데브레첸 ‘플라워 카니발’, 최대 문화 축제인 2017년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행사를 진행할 때 이들 동호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헝가리 4대 일간지, 헝가리 최대 포털 Index.hu 등 현지 주요언론 매체의 관심과 집중 보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 한류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한류문화 동호회를 양적·질적으로 활성화시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류 붐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업무담당자를 포상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3) 트위치는 게임 전용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를 말함

문화체육관광부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금 직접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내 용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은 [표 1] 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일부와 각종 강좌 수입금을 해당 강좌 재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표 1] 수입금 직접사용 내역(2012~2016)

(단위: AUD)

연도	수익금 내역	수익금액	직접사용현황		반납금액
			금액	내역	
2012	부가가치세 환급금(‘12.1~2분기)	31,199.64	31,199.64	일반회계(수용비) 예산으로 총당	-
2013	부가가치세 환급금(‘13.1~2분기)	32,228.90	32,228.90		-
2014	한식강좌 수강료(재료비)	9,448.00	9,431.60	강좌 주방물품 및 식재료 등 구입	16.40
	한지공예강좌 수강료(재료비)	923.00	923.00	공예품 재료 구입	-
	체험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	4,039.00	3,875.00	프로그램 관련 각종 재료 구입	164.00
2015	한식강좌 수강료(재료비)	11,112.00	8,816.86	식재료 구입	2,295.15
	한지공예강좌 수강료(재료비)	620.00	620.00	공예품 재료 구입	-
	체험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	3,202.00	1,709.33	프로그램 관련 각종 재료 구입	1,492.67
2016	한식강좌 수강료(재료비)	8,980.00	7,365.33	식재료 구입	1,614.67
	체험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	5,619.00	2,753.08	프로그램 관련 각종 재료 구입	2,865.92
합계		107,371.54	98,922.74	-	8,448.81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직접 사용의 경

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원은 위 [표 1]의 수입금을 세입조치 하거나,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경우 지도·감독부서인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문화원은 임의로 수입금을 사용하는 등 수입금 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직접 사용은 2012년부터 2013년 당시 호주달러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관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강좌 수입금 사용은 부족한 예산으로 각종 강좌재료 등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강좌 수강료, 참가비 등을 직접사용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수입금 직접사용 내역(2012~2016)

(단위: AUD)

연도	수입금 내역	수입금액	직접사용현황		반납금액
			금액	내역	
2012	부가가치세 환급금('12.1~2분기)	31,199.64	31,199.64	일반회계(수용비) 예산으로 총당	-
2013	부가가치세 환급금('13.1~2분기)	32,228.90	32,228.90		-
2014	한식강좌 수강료(재료비)	9,448.00	9,431.60	강좌 주방용품 및 식재료 등 구입	16.40
	한지공예강좌 수강료(재료비)	923.00	923.00	공예품 재료 구입	-
	체험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	4,039.00	3,875.00	프로그램 관련 각종 재료 구입	164.00
2015	한식강좌 수강료(재료비)	11,112.00	8,816.86	식재료 구입	2,295.15
	한지공예강좌 수강료(재료비)	620.00	620.00	공예품 재료 구입	-
	체험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	3,202.00	1,709.33	프로그램 관련 각종 재료 구입	1,492.67
2016	한식강좌 수강료(재료비)	8,980.00	7,365.33	식재료 구입	1,614.67
	체험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	5,619.00	2,753.08	프로그램 관련 각종 재료 구입	2,865.92
합계		107,371.54	98,922.74	-	8,448.81

그러나 문화원이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야 할 경우 지도·감독부서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승인절차 없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입금을 직접 사용했다는 문화원의 주장은 부당하다.

조치할 사항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향후 문화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을 국고로 납입하거나 직접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통보 요구

제 목 관서운영경비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내 용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면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은 매월 관서운영경비의 출납계산서와 동 경비를 예치한 은행잔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이며, 이를 통하여 관서운영경비의 출납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회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된다.

한편 주 시드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작성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와 은행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총 65건, 349,864천 원이 불일치(세부내역 불입)하는 등 관서운영경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월별 출납계산서 및 계좌 잔고현황 불일치 내역(2014~2017.3월)

연도	회계구분	월평균 불일치 내역		비고
		건수	금액(AUD) ¹⁾	
2014	일반회계	11	22,097(18,725,881원)	
	관광기금	2	1,327(1,124,552원)	
2015	일반회계	12	46,463(39,374,604원)	
	관광기금	3	4,993(4,231,267원)	
2016	일반회계	24	117,255(99,366,577원)	
	관광기금	2	1,419(1,202,517원)	
2017.3월	일반회계	10	219,093(185,668,171원) *‘16년 예산잔액 직접사용 승인 금액 포함	
	관광기금	1	202(171,182원)	
합계		65	412,849(349,864,751원)	

이에 대해 문화원은 관서운영경비 지출을 위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수령자가 문화원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와 수표발행 또는 기관카드를 사용 후 해당 사용 건에 대한 지급결의 지연으로 매월 불일치 내역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불일치 내역이 과다하고 지급결의 등은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서운영경비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향후 매월 문화원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와 계좌 잔고현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서운영경비의 지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AUD 1 = 847.44원(2017.4.27. 실지감사 종료일 당시 외환은행 최종 고시 매매기준을 적용)

[별표]

월별 관서운경비 출납계산서 및 계좌 잔고현황 불일치 상세내역(2014~2017.3.)

(단위: AUD)

연도	회계구분	월별	잔고현황 불일치 내역			비고
			금액	건수	유형별 주요사유	
2014	일반회계	1	405.52	3	2013년 예산잔액(직접사용승인대기중),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등	
		2	6,344.98	10	2013년 예산잔액(직접사용승인대기중),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5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3건) 등	
		3	2,055.90	4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2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4	6,188.73	15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9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5	13,902.30	12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6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5건)	
		6	4,523.21	10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3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6건)	
		7	6,818.74	7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5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8	-634.18	8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5건), 지급결의오류회수(1건), 자동이체 지급결의 지연(1건)	
		9	199,096.01	29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하반기 예산 영수결의 지연(2건), 미지불수표(14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2건)	
		10	10,557.89	12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8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지급결의액 오차(1건)	
		11	19,081.37	13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12건)	
		12	17,536.92	12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미지불수표(9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 및 추가지급결의(2건)	
		13	-111.00	2	12월 계좌관리 회수금(직접사용승인대기중),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관광기금	1	2,066.01	3	2013년도 관광기금 잔액(직접사용승인대기중),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2	2,005.77	2	2013년도 관광기금 잔액(직접사용승인대기중), 공용카드 도용당함('17.3.5.환불수령)	
		3	1,818.30	1	미지불수표(1건)	
		4	283.75	-	(관광기금 은행이자)	
		5	857.60	2	미지불수표(1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6	-400.21	5	미지불수표(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7	942.72	1	미지불수표(1건)	
		8	-2,357.21	3	미지불수표(2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연도	회계구분	월별	잔고현황 불일치 내역			비고	
			금액	건수	유형별 주요사유		
		9	-3,586.18	9	미지불수표(3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6건)		
		10	952.92	1	미지불수표(1건)		
		11	756.53	2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12	909.08	-	(관광기금 은행이자)		
		13	-319.20	1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2015	일반회계	1	6,644.21	14	미지불수표(12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2	76,347.87	22	미지불수표(18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추가지급결의액 정정(1건)		
		3	4,809.40	14	미지불수표(7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3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지급결의 금액오류(1건), 계좌이체 지급결의 지연(2건)		
		4	10,082.10	11	미지불수표(5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5건), 은행측 계좌이체 오류(1건)		
		5	2,624.33	6	미지불수표(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5건)		
		6	13,223.54	12	미지불수표(10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7	7,878.63	6	미지불수표(4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추가 지급결의 사유발생(1건)		
		8	153,077.33	12	미지불수표(5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6건), 예산 영수결의 지연(1건)		
		9	139,647.12	10	미지불수표(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5건), 수표 지급결의 지연(2건), 수표 지급결의금액오류(1건), 예산 영수결의 지연(1건)		
		10	156,350.37	18	미지불수표(13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예산 영수결의 지연(1건)		
		11	18,762.77	20	미지불수표(15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예산 영수결의 지연(1건)		
		12	14,572.10	13	미지불수표(12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13	0	-	-		
		관광기금	1	-12,429.23	3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3건)	
			2	2,034.46	2	미지불수표(2건)	
			3	4,113.54	7	미지불수표(4건), 계좌이체 지급결의 지연(2건),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4	3,196.55	2	미지불수표(1건),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5	3,013.02	2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6	3,160.56	1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7	3,247.01	1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8	2,842.17	3	지급결의 금액오류(2건),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9	3,366.57	1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연도	회계구분	월별	잔고현황 불일치 내역			비고
			금액	건수	유형별 주요사유	
2016		10	4,534.01	3	미지불수표(2건),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11	19,503.70	11	미지불수표(10건),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12	3,463.48	1	기 지출건 환불금 발생(1건, 연말국고반납예정)	
		13	0	-	-	
	일반회계	1	781,042.35	12	미지불수표(10건), 공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환불신청(1건), 예산 영수결의 지연(1건)	
		2	22,597.29	14	예산추가 수령 영수결의 지연(1건), 미지불수표(11건), 은행측 처리오류(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3	117,136.21	23	예산추가 수령 영수결의 지연(1건), 미지불수표(19건), 은행측 처리오류(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카드 선결제건(1건)	
		4	25,393.18	26	미지불수표(2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추가 지급결의건(1건)	
		5	27,440.83	21	미지불수표(19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추가 지급결의건(1건)	
		6	41,508.19	31	미지불수표(30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7	82,412.82	31	미지불수표(24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자동차이체건 지급결의 지연(4건), 예산수령 영수결의 지연(2건)	
		8	12,704.47	29	미지불수표(2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7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9	84,480.15	19	미지불수표(15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2건), 지급결의 금액오류(1건)	
10		94,704.70	30	미지불수표(28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11		75,751.44	41	미지불수표(19건), 지출액 지급결의 지연(21건), 공용카드 결제금액 오류(1건),		
12		159,139.75	35	미지불수표(33건), 이체금 지급결의 지연(2건)		
13		0	-	-		
관광기금	1	501.41	2	미지불수표(2건)		
	2	0.07	-	(관광기금 은행이자)		
	3	402.92	1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4	109.01	-	(관광기금 은행이자)		
	5	1,262.09	3	미지불수표(3건)		
	6	605.45	2	미지불수표(2건)		
	7	1,668.08	3	미지불수표(2건), 자동차이체건 지급결의 지연(1건)		
	8	12,054.29	4	미지불수표(4건)		

연도	회계구분	월별	잔고현황 불일치 내역			비고
			금액	건수	유형별 주요사유	
		9	-1,030.59	6	자동이체건 지급결의 지연(2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10	-227.92	4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4건)	
		11	60.74	2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12	262.21	-	(관광기금 은행이자)	
		13	260.89	-	(관광기금 은행이자)	
2017	일반회계	1	629,553.43	6	미지불수표(1건), 2016년 예산잔액(직접사용승인대기중, 1건), 2017년 예산수령 영수결의 지연(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3건)	
		2	23,539.41	20	미지불수표(18건), 공용카드 결제건 미반영(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1건)	
		3	4,185.39	5	미지불수표(2건), 자동이체건 지급결의 지연(1건),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관광기금	1	260.89	1	2016년 예산잔액분(직접사용승인대기중, 1건),	
		2	10.87	-	(관광기금 은행이자)	
		3	-334.39	2	공용카드 지급결의 지연(2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강의료 현금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내 용

시드니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2011년 개원부터 주재국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강좌의 강의료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

「국고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하나,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방법으로 집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화원은 위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지급해야하는 한국어강좌 강의료 총 101,959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1] 한국어강좌 강사료 현금지급 내역(2014 ~ 2017.3.)

(단위: AUD / 시간)

연도	강사명	강사료 현금지급 내역			비고
		강의기간	강의시수	강의료 ¹⁾	
2014		2월~12월	171	11,115.00(9,419,296원)	
		2월~12월	166.5	10,822.50(9,171,420원)	
		2월~12월	127.5	8,287.50(7,023,159원)	
		8월~12월	54	3,510.00(2,669,436원)	
2015		1월~9월	135	8,775.00(7,436,286원)	
		1월~12월	190.5	12,382.50(10,493,426원)	
		1월~12월	141	9,165.00(7,766,788원)	
		1월~12월	103.5	6,727.50(5,701,153원)	
2016		1월~12월	277.5	18,037.50(15,285,699원)	
		1월~12월	142.5	9,262.50(7,849,413원)	
		1월~12월	114	7,410.00(6,279,530원)	
2017.3월 현재		1월~3월	94	6,110.00(5,177,858원)	
		1월~3월	60	3,900.00(3,305,016원)	
		1월~3월	20	1,300.00(1,101,672원)	
		1월~3월	54	3,510.00(2,974,514원)	
합계			1,851	120,315(101,959,743원)	

이에 대해 문화원은 위촉된 한국어 강좌 강사들의 강사료는 문화원 예산 사정상 통상 현지대학 한국어 시간강사 강사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강사들의 요청과 처우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 금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강사들이 현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위 규정의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원의 주장

1) AUD 1 = 847.44원(2017.4.27. 실지감사 종료일 당시 외환은행 최종 고시 매매기준을 적용)

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좌 강사료 지급 시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한옥공간 조성공사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내 용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문화원 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표 1] 과 같이 ▲▲▲▲▲▲. Ltd(이하 “▲▲ Display”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한옥공간 조성공사(이하 ‘한옥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표 1] 한옥공간 조성공사 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AUD)	계약기간	업체명	계약방법
한옥공간 조성공사	252,978	2015.12.29.~2016.5.28.	▲▲▲▲▲. Ltd.	수의계약

자료 : 문화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수의계약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공사이거나 특정인의 기술·경험을 요하여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한옥공사는 공사비 추정가격이 약 215백만 원(AUD 252,978)이고, 공사내용이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하여 경쟁이 불가능한 공사가 아니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도 문화원은 수의계약으로 ▲▲ Display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동 업체가 2011년 문화원 개원당시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어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의계약으로 동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에서 국가발주 공사를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한 것은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는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정업체의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 Display가 문화원 공사 등 오랜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있다고 하나, ▲▲ Display만이 한옥공사를 시행할 특정 기술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옥공사는 인테리어 전문업체면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이유로 동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다는 문화원의 주장은 부당하다.

2. 공사비 집행 부적정

한편 문화원은 위 한옥공사를 시행하면서 [표 2] 와 같이 당초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옥공간에 필수 시설인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8건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표 2] 한옥공간 추가 공사 현황

순번	추가 공사내용	추가 공사금액(AUD)	비고
1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추가설치	26,386	공사계약 기간 내
2	황토 기단 바닥 조명시설 추가설치	5,678	공사계약 기간 이후
3	방바닥 마감재 3중 추가 도포	7,527	"
4	사랑방 난방기능 설비	4,224	공사계약 기간 내
5	목재 샌딩 및 천연도료 도포	10,729	"
6	보안 CCTV 설치	2,605	공사계약 기간 이후
7	장애인 램프 제작	378	"
8	황토기단 코팅 작업	2,462	"
계	계	59,989	

자료 : 문화원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원은 당초 계약된 한옥공사 내용 외에, [표 2] 와 같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문화원은 위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후, 추가공사비(AUD 59,989)는 계약업체(▲▲ Display)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급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계약관련 규정 미준수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이 한옥공간 공사를 위해 ▲▲ Display와 계약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또한 계약체결 시 징구해야하는 계약(선금금, 기성금)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앞으로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시고, 계약 담당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행정직원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기준 및 보상 부적절

소 관 기 관 해외문화홍보원

관 계 기 관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내 용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행정직원의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외문화홍보원이 재외한국문화원에 시달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 제20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행정직원의 표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근로시간 외에 행정직원이 출·퇴근 시간(오전10시/오후 6시)전·후에 근무한 시간 및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는 법정근로 시간 외에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직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원이 직원들의 1일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총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한 시간만을 시간외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체휴무도 시간외 근무 누적 시간이 12시간에 되어야 1일 대체휴무를 인정하고 있는 등 행정직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추후 법적 분쟁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원은 주재국 노동관계법령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시간외 근무 인정 및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장은 적절한 행정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 인정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